대형산불 피해복구 및 지역재건을 위한 특별법안 (박형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9855

발의연월일: 2025. 4. 15.

발 의 자: 박형수 · 김형동 · 신성범

서범수 · 서천호 · 임종득

이만희 · 정희용 · 조지연

이상회 · 김정재 · 송언석

임이자 · 구자근 의원

(14인)

제안이유

최근 기후위기의 심화로 이상고온, 강풍, 극심한 가뭄 등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대형산불의 빈도와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대형산불은 기존 산불과 달리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르고 예측이 어려워, 단일 재난을 넘어 복합적·광역적 피해를 초래하는 새로운 유형의 재난으로 진화하고 있다.

특히, 2025년 3월 21일부터 30일까지 경상북도 북부지역 및 경남과울산 일부지역에서 발생한 대형산불은 막대한 산림을 소실시켰을 뿐만 아니라, 산업기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큰 경제적·사회적 피해도 발생시켰다. 이는 국내 산불 피해 역사상최대 규모로 기록되었으며, 해당 지역의 지방소멸위험지수가 전국 최고 수준임을 고려할 때, 지역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재난첨단 대응 기술을 기반으로 한 조기 감지 시스템 구축, 실시간 정보 공유, 지역 간 협업 체계 강화 등 산불 대응의 전 과정에 대한 구조적 전환과 역량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본 특별법은 지난 3월 대형산불 피해지역과 주민에 대한 실질적이고 신속한 지원을 통해 기존 법령체계에서 보호하지 못한 피해에 대한 구제와 중장기적 관점의 종합적인 복구 및 지역공동체의 재건을 목적으로 하며, 기후위기 시대 대형 재난에 대한 국가적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한다. 또 적극적인 재정지원과 규제 특례 제공 등을 통해 피해지역의 조속한 회복과 재도약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하는 것이다.

주요내용

- 가. 2025년 3월 21일부터 3월 30일 사이에 경북 북부지역(의성, 안동, 청송, 영양, 영덕), 경남 일부지역(산청, 하동), 울산시 울주군 등에 서 발생한 대형산불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피해주민 구제, 지역 회복, 공동체 지속가능성 확보를 추진함(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
- 나. 국무총리 소속 "피해복구 및 지역재건 위원회"와 실무지원단을 설치해 종합계획 수립, 피해주민 인정, 지원금 결정 등을 수행하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 계획을 수립·시행함(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 다. 개인·사업·산업·고용·공동체 피해로 유형을 구분하고, 생활· 의료·이주 정착 지원금을 지급하며 재난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함 (안 제10조 및 제11조).
- 라. 주거, 농림어업, 산업단지, 중소기업 복구를 추진하며, 단순 복구를 넘는 개선형 복구와 지역 특화형 회복을 지향함(안 제12조부터 제1 9조까지).
- 마. 기존 법정 정책사업들을 대형산불 피해지역에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4조).
- 바. 공동주택단지 조성 시 친환경·안전 설계를 반영하고 건축 규제를 완화하여 지역공동체 회복을 도모함(안 제25조 및 제26조).
- 사. 복합기능 집적지구 조성을 통해 체계적인 복구 및 지속가능한 지역재건을 지원함(안 제28조).
- 아. 추모공원 및 추모비 설치 등 기념사업을 통해 주민 심리회복을 지원함(안 제29조 및 제30조).
- 자. 인공지능(AI) 산불예측, 표준 대피매뉴얼, 대응장비 확충, 마을 산불위험지도 작성, 주민 훈련, 순찰대 제도화를 통해 산불대응역량을 강화함(안 제46조부터 제55조까지).
- 차. 특별회계를 설치해 복구·재건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고, 국고보 조율 상향, 세제감면, 인허가 간소화 등 특례를 적용함(안 제23조, 제56조부터 제60조까지).

대형산불 피해복구 및 지역재건을 위한 특별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기후위기 등으로 인한 대형산불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피해주민의 생활 안정과 피해지역의 경제 회복 및 인구소멸 위기 대응, 정주환경 혁신과 공동체 기반 재구성, 산림관 리체계 효율화와 재난 대응역량 강화를 통하여 재난 회복력을 갖춘 지역 기반을 조성하며, 피해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대형산불"이란 2025년 3월21일부터 3월30일 사이에 경북 북부지역(의성, 안동, 청송, 영양, 영덕), 경남 일부지역(산청, 하동), 울산시 울주군 등에서 발생한 산불을 말한다.
- 2. "피해주민"이란 대형산불로 인하여 신체, 재산, 심리 등의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
- 3. "피해지역"이란 대형산불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거나 이 법에 따라 별도로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 4. "지역재건"이란 대형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서 물리적 복구를 넘어 정주환경 개선, 공동체 회복, 지역 인구 유지 및 인구소멸 위기 대응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 마련을 위한 포괄적 복원 및 발전 과정을 말한다.
- 5. "산불고위험지구"란 산불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피해 위험이 큰 지역으로서 산불 예방 및 대응 강화를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지정 되는 지역을 말한다.
- 6. "채취 임산물"이란 자연 상태에서 자생하거나 산림에서 채취되는 임산물로서 송이, 능이 등의 버섯류와 수액 등 임산물을 말한다.
- 7. "산업단지"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한다.
- 8. "임시주거시설"이란 대형산불로 인하여 주거지를 상실한 피해주민에게 제공되는 임시거주공간으로, 피해주민의 사용 후 마을 공동시설, 관광 숙박시설, 창업 인큐베이팅 시설 등 지역 활성화 용도로 전환·활용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 9. "산불폐기물"이란 대형산불로 인하여 발생한 생활폐기물, 건물폐기물 등 각종 폐기물을 말한다.
- 10. "복합기능 집적지구"란 주거, 상업, 공공서비스 기능이 밀집되고, 대중교통 중심의 구조를 갖추며, 에너지 효율과 기후회복력이 강 화된 도시 구조를 갖춘 지구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대형산불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피해를

- 입은 지역, 주민, 법인 및 단체에 적용한다.
- ② 제1항에서 정한 적용 대상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할 수 있다.
- 1. 피해지역의 주소, 거소, 사업장 또는 근무지를 두고 있던 자
- 2. 피해지역에서 일정한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영위하고 있었던 법 인·단체
- 3. 대형산불로 인하여 연계적으로 기능이 정지되거나 손실을 입은 인근 지역 또는 주민
- ③ 이 법은 대형산불의 직접적인 피해뿐 아니라, 이로 인한 간접적 피해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다. 간접적 피해의 판정 기준, 지원범위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피해주민 보호, 지역 회복 및 재건, 재난대응체계 강화, 산림관리체계 개선, 학교시설에 대한 안전 대책 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기본계획에 따라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 ·이행하여야 하며, 국가는 이에 필요한 예산, 기술 및 행정적 지원 을 제공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주민과 피해지역의 의견을 수렴할수 있는 제도적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정책 수립 및 이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④ 국가는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관

- 련 법령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규제 특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지역 산림의 효율적 관리와 재건을 위하여 상호 협력하고, 산림 관련 업무와 권한의 합리적 분담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래 재난에 대비하여 구호물품 비축, 재 난대응장비 확충, 전문인력 양성 등 사전 예방 및 대비 체계를 구축 ·운영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산림보호법」, 「산지관리법」,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사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교부세법」, 「관광진흥법」, 「산림재난방지법」,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소상공인기본법」, 「재해구호법」 등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대형산불 피해의 복구 및 지원에 관하여 이 법을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이 법보다 피해주민 및 피해지역에 유리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적용한다.
- 제6조(피해복구 및 지역재건 위원회와 지원 조직 설치 및 기능) ① 대형산불과 관련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피해복구 및 지역재건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실무지원단을 둔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 1. 피해복구 및 지역재건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 2. 피해주민 인정 및 유형 결정
- 3. 지원금 및 사업 지원 범위와 기준 설정
- 4. 피해복구 및 지역재건 계획의 적정성 심의
- 5. 피해유형별 지원사업 간 조정 및 중복 방지
- 6. 지역주민 의견수렴 결과 반영 여부
- 7. 지방소멸 방지 및 활성화 사업 심의
- 8.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정부는 제2항제1호에 따라 수립·확정된 종합계획에 따라 기본 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실행계획은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를 통하여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확정하여야 한다.
- ④ 기본계획과 실행계획 간 충돌이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그사유와 대안을 위원회에 제시하고, 위원회는 이를 존중하여 협의·조정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실행계획이 우선한다.
- ⑤ 제2항에 따른 피해인정 및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피해주민은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청구할수 있으며, 위원회는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는 사실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한 차례에 한하여, 최대 30일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⑥ 제5항에 따른 재심의 결정에 불복하는 피해주민은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의 절차를 거쳐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 ⑦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에 실무지원단을 둔다. 실무지원단에는 피해지역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을 파견받 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음 각 호의 인사를 포함하여야 한다.
 - 1. 관계 중앙행정기관 공무워
 - 2. 지방자치단체 추천 인사
 - 3. 피해지역 주민대표 및 이재민 단체 대표
 - 4. 산불・재난・복구 관련 분야의 전문가
 - 5. 민간 구호단체 또는 복지기관 관계자
 - ②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지명하고,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위원은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단체의 추천을 존중하여 위촉한다.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피해지역 주민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위원회 및 실무지원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 제8조(정기적 점검 및 성과 평가) ① 위원회는 반기별로 피해복구 및 지역재건 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이를 국무총리에게 보고하 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매년 종합적인 성과 평가를 실시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는 성과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9조(자료 제출 및 협조 의무) ① 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 피해주민, 기업 및 단체 등에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피해복구 및 재건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정보와 행정자료를 상호 공유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2장 피해주민 및 피해지역 지원

제10조(피해유형의 분류) ① 피해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개인피해: 주거, 생계, 건강, 심리, 교육 등

- 2. 사업피해: 영업, 시설, 설비, 재고, 건물, 사업장, 공장, 창고, 기자 재 등
- 3. 산업피해: 농업, 임업, 어업, 제조업 등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주된 업종분야
- 4. 고용피해: 실직, 휴직, 임금 감소 등
- 5. 공동체피해: 공공시설, 마을 공동시설, 문화유산, 의료시설 등
- ②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피해유형, 피해 판정 기준, 지원 범위 및 방법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피해주민에 대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주민에 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 1. 생활지워금
 - 2. 의료 및 심리치료 지원금
 - 3. 이주 정착 지원금
 - 4. 교육비 지원금
 - 5. 장례비 지원금
 -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금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지역 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다음 각 호의 금융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 1. 복구 비용
 - 2. 융자 지원
 - 3. 보증 지원

- 4. 채무 상환유예
- 5. 이자 차액 보전
-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지원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은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피해 규모가 크거나 피해 확인에 시간이 소요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신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⑤ 노인, 장애인, 임산부, 아동 등 재난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지원 금액을 가산하고, 신청 및 지급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우선 지원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⑥ 피해주민 자녀 중 대학생 및 미취업 청년에 대해서는 생활안정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지원의 구체적인 대상, 금액, 지급기준,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임시주거시설의 설치 및 활용)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지역 내 신속한 주거공급을 위하여 임시주거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필요한 비용 세부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 가구당 적정 면적 확보
- 2. 냉난방 성능 확보
- 3. 냉난방 설비, 주방, 화장실 등 기본 생활시설 구비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 ③ 제1항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은 피해주민이 임시거주용으로 사용한 후,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전환하여 활용할 수 있다.
- 1. 마을 공동시설(공동 작업장, 농산물 판매장, 주민 복지시설 등)
- 2. 농어촌 체험시설 또는 관광 숙박시설
- 3. 창업 인큐베이팅 시설
- 4. 문화・예술・스포츠 활동 공간
- 5. 관광·문화·휴양시설
- 6. 그 밖에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④ 제3항에 따라 임시주거시설을 전환·활용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건폐율, 용적률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시주거시설의 전환·활용을 위하여 필 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향후 일정 수량의 임시주거시설을 확보・관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설치, 활용, 전환및 지원에 관한 세부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의료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형산불 피해주민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회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의료지원을 제공하여 한다.
 - 1. 피해주민에 대한 무상 의료서비스 제공
 - 2. 지역 의료기관 피해복구 및 기능강화 지원
 - 3. 이동식 의료시설 및 장비 지원
 - 4. 원격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비 및 시스템 지원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지원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의료지원을 위하여 관련 의료기관, 의료인 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고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지역의 의료취약계층(노인, 장애인, 임산부, 영유아 등)에 대한 의료지원은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피해지역 내 의료기관에 대하여 「의료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시설기준, 인력기준, 수가적용 등에 있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의료지원 특례의 대상, 범위, 기준,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피해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지

역에 다음 각 호의 복구 및 재건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 1. 주거시설(무허가 주거시설을 포함한다) 복구 및 임시거주시설 제공
- 2. 마을 복구 및 공동 인프라 재건
- 3. 농림어업 재건 및 생산 기반 회복
- 4. 공동주택단지 조성
- 5. 사회복지·문화·생활기반시설, 의료기관 복구
- 6.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운영 및 복합시설 설치
- 7. 산업단지 및 공장 복구 및 경쟁력 강화
- 8.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시설물 복구 및 재건 사업
- 9. 에너지 시설 복구 및 재건
-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구 및 재건사업
- ② 제1항제1호의 주거시설 복구 지원액은 기존 주거시설 복구가 가능한 수준으로 책정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지역의 복구 및 재건을 추진함에 있어 단순한 원상복구를 넘어 지역 특성과 미래 발전을 고려한 개선형 복구를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한다.
- 1. 재난취약계층의 특성을 고려한 시설 및 주거 설계
- 2. 지속가능한 에너지 활용 및 환경친화적 설계
- 3. 재난대응력 강화를 위한 안전 설계

- 4.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 및 산업 연계
- 5. 지역산업 활력 증진과 경제발전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지역 내 비영리 주체가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도 복구비용을 공공시설에 준하여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영리 주체"에는 개인이 운영하는비영리 사회복지시설도 포함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사업 및 지원의 구체적인 대상, 범위, 기준,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5조(농림어업 분야 특별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지역의 농림어업인에 대한 생산기반 복구 및 소득 보전을 위하여 다음각 호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 1. 농경지, 과수원, 시설하우스, 어선, 양식장 등 생산기반 복구 지원
 - 2. 농림어업용 기계·장비 지원
 - 3. 농림수산물 생산 · 유통 · 가공시설 복구 지원
 - 4. 대체수종, 대체작물 재배 및 양식업 전환 지원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지원을 위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으며, 지원 기준·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대형산불 피해지역의 농어업인에 대하여 재해복구비 지원 대상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 및 재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지법」 제31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관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한다.
- 1. 해제 면적이 1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 도지사
- 2. 해제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 시장·군수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임업인의 경영임지 및 건축물·시설물에 대한 보험가입을 지원하여야 하며, 보험가입비 요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지역의 임업인에 대한 산림경영계획 서 작성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⑦ 국가는 임산물 생산단지, 산림복합경영단지 공모 시 대형산불 피해지역의 임업인을 우선 선정하며, 보조 비율은 80퍼센트로 한다.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지원의 범위, 요건,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6조(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특별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지역 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영 정상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 1. 부지 및 사업장 건축물ㆍ시설ㆍ설비ㆍ자재 처리 및 복구
 - 2. 원자재 및 제품 손실 보상
 - 3. 사업장 기계·장비·생산·유통·가공시설 복구 지원

- 4. 경영안정자금 융자
- 5. 영업결손 등에 대한 보전
- 6. 고용유지 지원금 지급
- 7. 기술개발 및 마케팅 지원
- 8. 업종 전환 지원
-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지원을 위한 자금을 융자할 경우 저금리 직접융자와 이자차액보전으로 지원하며, 이자지원과 관련한 소요재원은 국비, 지방비로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금의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건물, 시설, 설비 등이 대형산불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그 복 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비로 지원할 수 있다.
-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피해지역을 지정하고 우선 지원할 수 있다.
- ⑦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고

- 용위기지역으로 피해지역을 지정하고 우선 지원할 수 있다.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피해범위, 산정기준 및 지원금 결정기준, 지원의 요건,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⑨ 그 밖에 지원금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지원금의 기준, 금액 및 시기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다.
- 제17조(산업단지 및 공단 피해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형산불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산업단지 및 공장의 기능 회복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행정·재정적지원을 할 수 있다.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반시설" 의 복구
 - 2. 공동이용시설 복구 및 확충
 - 3. 입주기업 공동 물류 · 유통 지원 사업
 - 4. 산업단지 및 공단 내 에너지 효율화 시설 설치
 - 5. 스마트 및 안전 인프라 조성
 -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비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산업단지 및 공장의 복구 과정에서 첨단화, 친환경화, 디지털 전환 등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제18조(특구지역 국고보조 등의 복구지원) ① 피해지역 내 규제자유특구에서 특구 목적과 직접적 연관을 가지고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형산불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특구사업자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복구사업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이경우 규제자유특구 내 조성된 민간기업 시설에 대한 재난피해 시국고지원을 통한 복구를 포함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대형산불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범위, 기준,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9조(관광사업자 재난지원금 지원) ① 대형산불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 피해를 입은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관광사업자 에 대하여 정부는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재난지원금(이하 "지 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해당 사업자가 이 법 제14조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도 초과 피해 범위에 한하여 중복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금 지급 조건 및 절차는 이 법 제1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을 따른다.
- 제20조(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 대형산불 등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주택이 소실된 장애인에게 일상 생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②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피해를 입은 발달장애인의 경우 긴급돌봄센터를 1회이용 시 30일 이내, 1년 기준 최대 120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긴급돌봄서비스의 이용 대상, 서비스 내용, 지원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1조(문화예술체육 활동 및 심리치유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지역의 공동체 회복 및 주민 심리치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1. 문화축제, 예술제, 체육행사 등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 2. 문화예술체육 활동을 활용한 심리치유 프로그램
 - 3. 정신건강복지센터, 지역보건기관, 민간 전문가 등과 연계한 심리 회복 프로그램
 - 4. 주민 주도형 문화・예술・체육 동아리 지원
 - 5. 그 밖에 지역사회 회복에 필요한 프로그램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피해지역 내 관련 기관, 단체 및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한다.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공모사업 추진 시 피해지역을 대상으로 우선 선정하거나 평가 점수의 일정 부분을 가점으로 부여하는 등 우대할 수 있다.

- ④ 제1항의 사업은 대형산불 발생일로부터 최소 5년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연도별 실적 및 성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 사업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⑤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지원의 내용,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2조(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①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피해지역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해당지역에 체류 중이거나 체류하려는 외국인에 대한 특례를 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특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요건을 달리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 1. 사증 발급절차
 - 2. 체류자격의 변경
 - 3. 체류기간의 연장
 - ③ 제1항에 따른 특례 적용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 한정한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 요건, 절차 등에 필요한 세 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3조(조세감면 및 납부 유예) ① 국세 및 지방세에 대하여 피해주민 과 피해지역 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1. 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등 국세의 감면 또는 면제
- 2.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의 감면 또는 면제
- 3. 세금 납부 기한의 3년 이내 연장
- 4. 분할납부 허용(최대 3년)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 ② 대형산불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피해지역에 창업하거나 일정금액 이상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
- 1.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 2.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면제
- 3. 재산세 감면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제 혜택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적용 세목 및 감면 요건, 절차 등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 제24조(법정 정책사업 우선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법정 정책사업을 대형산불 피해지역에 우선 지원할 수 있다.
 - 1.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제3호에 따른 지 구단위계획구역 사업
 - 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른 도시 재생사업

-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산림사업 및 제2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사업
- 4.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5조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 금 사업
- 5. 「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에 따른 재해복구사업
- 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9조에 따른 재난대책비 지원사업
- 7. 「양식산업발전법」 제65조에 따른 창업임대형 양식단지 사업
- ② 제1항에 따른 우선 지원 시 다음 각 호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 1. 사업 선정 시 우선 순위 부여
- 2. 국고 보조율 상향 조정
- 3. 별도 사업 물량 배정
- 4. 자부담 비율 완화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례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법정 정책사업 우선 지원의 절차, 범위, 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피해복구 및 재건

제25조(공동주택단지 조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형산불 피해

- 지역의 지방소멸과 마을 소멸을 방지하고 지역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하여 공동주택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단지 조성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1. 피해주민의 생활 여건 및 지역 특성 반영
- 2. 지역공동체 회복 및 활성화
- 3. 친환경적 설계 및 재난 대비 안전성 확보
- 4. 각종 편의시설 및 공동체 시설 설치
- ③ 공동주택단지 조성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76조, 제77조, 제78조에 따른 용도지역 제한, 건폐율, 용적 률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 1. 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에 공동주택 건립 허용
- 2. 건폐율, 용적률 상향 적용(기준의 1.5배 이내)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례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단지 조성 시 주택을 개별적으로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단지 조성을 통하여 현물로 지원할 수 있다.
- ⑤ 공동주택단지 조성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및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제27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협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⑥ 공동주택단지 조성을 위한 입지선정, 토지수용, 인허가 등에 관한 사항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3조의 절차에 따른다.
- ⑦ 공동주택단지 조성을 위한 각종 인허가 절차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준용하여 간소화할 수 있다.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공동주택단지의 세부적인 조성 방법, 규모, 입주대상자 선정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6조(공동주택단지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5조에 따른 공동주택단지 조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주택단지의 진입도로, 상하수도 등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주택단지 내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27조(산불재난지역 공동영농모델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형산불 피해지역 내 농경지, 과수원 등의 효율적 복구와 지속가능 한 경영을 위하여 공동영농모델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공동영농모델은 다음 각 호의 형태로 구성할 수 있다.
 - 1. 농림어업인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경영하는 영농조합법인

- 2. 마을 단위 또는 지역 단위의 공동경작 및 관리 조직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형태의 공동영농조직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영농모델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1. 공동경작을 위한 장비 및 시설 지원
- 2. 공동생산 농산물의 가공・유통・판매 지원
- 3. 공동영농조직의 운영 및 관리 지원
- 4. 공동영농 관련 교육 및 기술 지원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공동영농모델의 요건, 지원 기준,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8조(복합기능 집적지구 조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대형산불 피해지역의 체계적인 복구 및 지속가능한 지역재건을 위하여 복합기능 집적지구를 조성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복합기능 집적지구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다.
 - 1. 대형산불 피해지역 재배치 및 고밀도 개발 구역의 지정
 - 2. 생활권 기반 교통ㆍ에너지ㆍ환경 인프라의 통합 개발 방안
 - 3. 고령자 및 재난취약계층의 접근성과 정주 여건 확보 방안
 - 4. 기후위기 대응형 건축 및 도시 설계 기준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복합기능 집적지구 조성에 필

- 요한 기반시설 구축 및 주택·생활편의시설 건설 등에 필요한 행정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④ 제1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9조(추모사업 등 시행)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형산불로 인한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피해주민들의 심리적 회복과 재난대응 인식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가는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1. 추모공원의 조성
 - 2. 추모비의 건립
 - 3. 재난 피난시설의 설치 및 운영
 - 4. 그 밖에 위 목적에 부합하는 관련 사업
 -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추모공원 및 추모비(이하 "추모시설"이라 한다)의 명칭은 공모 등의 방법을 통하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 ③ 추모시설의 위치는 피해지역 내 주요 참사 현장 인근으로 하되, 지역주민과 유족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가 정한다.
- 제30조(추모시설 설치 지원) ① 국가는 제29조에 따른 추모시설의 설 치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학교보건 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특례의 범위, 절차 및 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1조(피해지역 재건을 위한 제조혁신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형산불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을 확대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의 경우, 다른 법률에 의한 국고보조율에도 불구하고 국고보조율을 추가하여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범위, 국고보조율,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2조(피해지역 산림의 회복 및 활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지역의 산림 회복과 활용을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계 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 1. 산림생태계 복원 및 생물다양성 확보 방안
 - 2. 산림자원의 순환적 이용 체계 구축 방안
 - 3. 산림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 4. 산림재해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 방안
 - 5. 4차 산업 기반 스마트 산림, 관광 및 레저 시설 개발 방안
 - 6.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한 산림자원 활용 방안
 - 7. 공공주도 지역상생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 조성 방안

- 8. 탄소흡수원, ESG 기반 산림사업, 바이오자원 생산지 조성 방안
- 9. 산악스포츠(그란폰도, 패러글라이딩 등) 대회 개최 및 시설 조성 방안
- 10. 그 밖에 지역 특성에 맞는 산림 활용 방안
- ②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지역을 탄소흡수원, 바이오자원 생산지, 산림관광지, 레저시설, 4차 산업 기반 스마트산림 등으로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따른 용도지역 제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③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산림 회복 및 활용 사업에 대하여 특별교부세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한 안정적 재원을 보장하여야한다.
- 제33조(지역주도형 산림복원 및 활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지역에 대하여 생태적 특성과 지역 여건을 반영한 복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복구계획을 수립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청장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 ③ 피해지역의 복구를 위한 보조금은 단순 조림사업 외에 다음 각호의 사업에도 사용할 수 있다.
 - 1. 산림관계법령에 따른 산림공익(관광)시설의 설치
 - 2. 지역주민의 생활기반 복원과 관련된 시설 개선

- 3. 산림 관광 자원화 및 소득 창출 사업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④ 제3항의 사업은 복구계획에 따라 승인받은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으로보지 아니할 수 있다.
- ⑤ 이 법에 따라 승인된 복구계획에 따라 복구비가 사용된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3에도 불구하고 해당 금액에 대한 반환 의무는 면제할 수 있다.
- ⑥ 지방자치단체는 산림복원 및 활용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실질적 참여와 이익 공유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복구계획의 수립·승인, 보조금의 사용. 면제 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4조(산림소득사업 우선 지원) 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도 불구하고, 피해지역에 대하여는 산림소득분야 보 조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 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취임산물(송이, 능이, 수액 등) 및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에대하여도 보상금을 보조할 수 있다.
 - ③ 대형산불 피해로 인한 송이 등 임산물 채취 불가능 지역에 대해서는 최근 3년간 평균 생산량 및 산출금액을 기준으로 적정 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한다.

- ④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도 불구하고, 피해지역은 임업경영 회복을 위하여 임 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을 계속 지급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지원 및 보상의 기준,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5조(산불폐기물 처리 등) ① 국가는 대형산불로 인하여 발생한 산불폐기물(생활폐기물, 건물폐기물 등)의 처리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 및 장비 등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고에서 전액 지원하여야 한다.
 - ② 공사 중인 폐기물처리시설이 대형산불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복구비용을 국고에서 전액 지원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복구 지원의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6조(위험목 제거사업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3조에도 불구하고, 대형산불·산사태 등 피해지역의 위험목 제거사업의 경우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위험목 제거사업을 시행한 경우, 사업 시행 후 즉시 산림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산림 소유자가 부재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절차에 따라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 1. 산림 소유자의 최종 주소지로 사업 시행 사실 통지
- 2.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 이지에 30일 이상 공고
- 3. 공고 기간 경과 후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동의한 것으로 간주
- ④ 제1항에 따른 위험목 제거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산림 소유자에 게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적정 보상을 하여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위험목 제거사업의 절차 및 방법, 보상 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7조(산불진화임도사업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산불·산사태 등 산림의 피해지역 내 임도를 설치하려는 경우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임의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산불진화임도사업을 시행할 경우, 사업 시행 후 산림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산림 소유자가 부재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절차에 따라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 1. 등기부등본 상 산림 소유자의 주소지로 사업 시행 사실 통지
 - 2. 통지가 불가능할 경우 산림 소재지의 기초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공고
 - 3. 공고 기간 중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동의한 것으로 간주
 - ④ 제1항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산림 소유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

- 우 이에 대한 손실을 보상할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산불진화임도사업의 절차 및 방법, 보상 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8조(피해지역 산림경영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지역 산림을 활용한 소득증대를 위한 산림경영을 선도하기 위하여 "산림 경영특구"를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산림경영특구"는 다음 각 호의 형태로 구성할 수 있다.
 -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생산자 단체
 - 2. 마을 단위 또는 지역 단위의 협업경영 및 관리 조직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형태의 협업경영조직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림경영특구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1. 지역 맞춤형 소득수종 조림사업지원
 - 2. 산림경영을 위한 장비 및 시설 지원
 - 3. 산림경영을 위한 산림사업 지원
 - 4. 생산물의 가공・유통・판매 지원
 - 5. 협업경영조직의 운영 및 관리 지원
 - 6. 협업경영 관련 교육 및 기술 지원
 - ④ 산림경영특구로 선정된 경우「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

- 률 시행규칙」 제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에 대해서도 지원을 할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산림경영특구의 요건, 지원 기준,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9조(산림 투자선도지구) ① 지방자치단체는 산림 투자선도지구를 자체적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 지구에는 다음 각 호의 특례를 적용한다.
 - 1. 인허가 의제 처리 및 절차 간소화
 - 2. 지방세 감면 및 재정 지원 우선 배정
 - 3. 기반시설 우선 설치 지원
 - 4. 토지 수용 및 사용에 관한 특례
 - 5. 그 밖에 지역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특례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산림 투자선도지구의 지정 기준, 절차 및 특례 적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0조(피해지역 산림관리 권한의 위임) ① 국가는 피해지역 산림의 관리·정비·개발에 관한 권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 권한의 기간 및 범위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 1. 「산지관리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보전산지의 지정. 변경・

해제 및 권한

- 2. 「산지관리법」 제8조에 따른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 3.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 4.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
- 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산림사업의 시행 및 감독
- 6.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자연 휴양림 지정·해제 및 제21조의2에 따른 타당성 평가 적지판정
- 7.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유림의 관리 및 운영
-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국 토교통부장과 승인 권한
- 9.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권한
- 10.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지정 권한
- 11. 재해복구계획 수립·시행 시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
- 12. 그 밖에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 및 재건을 위하여 필요한 권한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
- ② 위임된 권한의 시행 절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법령의 절차적 요건은 최소한으로 간소화하 되, 지역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산림관리 및 지역개발 체계를 구축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③ 이 법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위임받은 권한을 효율적으로 행사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의 제공, 기술 지원, 재정지원 등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41조(관광단지개발) ① 국가는 피해지역의 경제 회복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단지의 지정 요건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완화할 수 있다.
 - 1. 면적 기준 : 3만 제곱미터 이상(기존 5만 제곱미터 이상)
 - 2. 투자 기준 : 30억원 이상(기존 50억원 이상)
 - 3. 시설 기준 : 관광객 이용시설, 관광 편의시설, 숙박시설 중 2종 이상 포함(기존 3종 이상)
 - ② 피해지역 내 관광단지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수 있다.
 - 1. 진입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 재정 지원
 - 2. 환경영향평가 등 인허가 절차의 간소화(평가항목 축소 및 기간 단축)
 - 3. 민간투자자에 대한 세제 감면 및 인센티브 제공
 -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관광단지의 조성과 운영에 있어 피해주민의 참여 및 고용을 우선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례는 대형산불 발생일로부터 10년간 적용하되,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관광단지의 지정 요건 완화, 조성을 위한 조치, 피해주민 참여 보장 및 특례 적용 기간에 관한 세부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2조(자연휴양림 조성 등 기준 완화) ① 피해지역의 효율적 복구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조성 면적 기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완화하여 적용한다.
 - 1. 공립 자연휴양림: 10만 제곱미터 이상(기존 20만 제곱미터 이상)
 - 2. 사립 자연휴양림 : 5만 제곱미터 이상(기존 13만 제곱미터 이상)
 - 3. 공립 치유의 숲 : 5만 제곱미터 이상(기존 50만 제곱미터 이상)
 - 4. 사립 치유의 숲 : 5만 제곱미터 이상(기존 30만 제곱미터 이상)
 - ② 제1항에 따른 자연휴양림 등의 타당성 평가 적지판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완화하여 적용한다.
 - 1. 자연휴양림 : 75점 이상(기존 100점 이상)
 - 2. 치유의 숲 : 83점 이상(기존 110점 이상)
 - 3. 숲속야영장 · 산림욕장 등 : 38점 이상(기존 75점 이상)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성 기준 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3조(에너지 보급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주민의 에너지효율 및 에너지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우선지원할 수 있다.
 - 1. 에너지관련 국가 지원사업
 - 2.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 개발 사업
 - 3. 취약계층 지원 및 에너지 절약 사업
 - 4. LPG배관망 구축 등 생활에너지 지원사업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보급 지원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에너지 보급 지원을 위하여 필 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에너지 보급 지원 특례의 대상, 범위, 기준,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4조(체육시설 결정 지원) ① 국가는 피해지역의 경제적·사회적· 문화적 회복과 지속적인 지역발전을 위하여 「체육시설의 설치·이 용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체육시설 조성에 필요한 「도시·군계획 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00조 및 101조에 따른 체육시설 결정기준과 체육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 1. 피해지역 내 체육시설 결정을 위한 용도지역 기준
 - 2. 피해지역 내 체육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에 대하여 체육시설 부 지 면적 기준

- ②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 결정기준과 체육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 완화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5조(공공용 시설 설치 시 부담금 감면)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가 피해지역에 이재민을 위한 공공용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관 계 법령에 따른 부담금을 감면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 감면의 범위, 감면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재난 대응 역량 강화

- 제46조(산불고위험지구 지정 및 관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불고위험지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 지역에는 대응장비, 감시시스템, 예방교육 등을 우선 배치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관할 지역 내에서 산불 위험이 높은 지역을 산불고위험지구로 자체 지정할 수있는 권한을 가진다.
 - ② 산불고위험지구 지정은 3년마다 재평가하여 갱신하며, 지정 기준, 관리 방법 및 지정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국가는 산불고위험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지원을 우선적으로 제공한다.
 - 1. 산불 예방 및 진화를 위한 장비 및 인력 지원
 - 2. 산불 위험 저감을 위한 산림 정비 및 관리 지원

- 3. 주민 대피시설 및 대피로 구축 지원
- 4. 산불 예방을 위한 임도시설
- 5. 그 밖에 산불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불고위험지구 내 토지 소유자 또는 거주자가 산불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조치를 이행할 경우 이에 대한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 제47조(산불대응체계 전환 시범사업)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불대응체계의 혁신과 피해지역 회복력 강화를 위하여 시범사업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 ② 시범사업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할 수 있다.
 - 1. 산불 조기감지 및 예측 시스템 운영
 - 2. 야간 산불 진화장비 및 드론 등 첨단 대응기술 적용
 - 3. 재난 회복형 임시주거지 및 정착촌 조성
 - 4. 주민 참여 기반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 5. 산림ㆍ농경지의 통합적 복구 및 생태적 회복 모델 적용
 -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시범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해당 지역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각종 특례 조항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있다.
 - ④ 시범사업의 지정 절차, 운영 방식,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8조(산불예측 및 대피체계 고도화) ① 국가는 인공지능(AI) 기반

산불예측 시스템과 조기경보체계를 구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제공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공된 정보를 활용하여 주민경보체계를 마련하고 운영하여야 하며, 봄·가을 산불 조심기간 중 각 1회 이상 모의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③ 국가는 산불 발생 시 풍속에 따른 대피 기준을 포함한 표준 대피 매뉴얼을 마련하고,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특성에 맞춘 맞춤형대피 매뉴얼을 수립·운영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시간당 산불 확산 속도를 고려한 사전 대피 범위(최소 10km 이상)
- 2.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특별 대피지원 방안
- 3. 산불 방향 및 풍속에 따른 단계별 대피 요령
- 4. 마을별 대피 경로 및 대피소 지정
- 5. 강풍 시 이격거리 확대 기준
-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④ 국가는 민간 기술기업과의 협업을 통하여 예측 정확도를 개선하고, 관련 기술의 지방자치단체 이전도 지원할 수 있다. 이를 위한 민관협력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한다.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불예측 및 대피체계의 효과성을 정기

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하여야 한다.

- 제49조(산불위험지도 구축 및 활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산불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활권 중심의 "마을 산불위험지도"를 작성·활용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산불 이력, 경사도, 식생 등 산림 중심 정보
 - 2. 고령자 비율, 대피소 접근성, 통신 음영지역, 민감시설 등 생활권 기반 정보
 - 3. 마을 단위 대피 우선순위 설정 및 위험등급 분류
 - ② 마을 산불위험지도는 재난대응 매뉴얼, 자원 배치계획, 재난문자시스템 등과 연동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 제50조(대응장비 및 인프라 확충) ① 국가는 산불 발생 시 효과적인 진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비를 추가 확보하고 시설을 보완하 여야 한다.
 - 1. 8천 리터 이상 대용량 물탱크를 갖춘 대형 헬기
 - 2. 야간 산불 진화가 가능한 특수 장비
 - 3. 산불 감시 및 초기 진화를 위한 드론 시스템
 - 4. 산불 확산 억제를 위한 전문 지상 장비
 - 5. 수송기 기반 대형 진화시스템
 - 6. 산불진화 및 예방을 위한 산불 임도시설
 -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비 및 시설
 -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산불대응장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국비

- 를 지원할 수 있다. 지원 규모와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항공 진화가 어려운 강풍 상황에서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장비를 개발·도입하여야 한다.
- ④ 대응장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를 통하여 효율적으로 배분·운영하며, 장비 운영 현황과 성과는 매년 정기적으로 평가하 여 개선한다.
- 제51조(구호물품 비축 및 관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불 등 대형 재난에 대비하여 의류, 생필품, 침구류 등 구호물품을 사전에 비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구호물품의 적정 비축량, 관리기준, 보관 시설 등에 관한 기준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구호물품을 지역별로 적정 하게 비축·관리하여야 한다.
 - 1. 의류 및 침구류
 - 2. 위생용품 및 생활필수품
 - 3. 재난 대비 비상식량 및 식수
 - 4. 응급의약품 및 의료용품
 - 5. 그 밖에 재난 구호에 필요한 물품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구호물품을 신속하게 배포할 수 있는 공급망과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비축 구호물품의 현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물품을 교체하거나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

-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구호물품의 비축·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구호물품의 비축·관리에 관한 세 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2조(재해예방시설 설치) ① 산불 또는 산사태 피해지역에 대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9 조에 따라 재난복구계획을 수립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재해예방시설 설치를 포함하여야 한다.
 - 1. 일정규모 이상의 산사태 위험구역에 대한 사방댐 설치
 - 2. 주거지역과 산림지역 사이의 완충지대 조성
 - 3. 그 밖에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재해예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산사태 위험구역의 기준과 제2항에 따른 지원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3조(산불대응역량 강화 및 훈련)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 민의 산불대응역량 강화를 위하여 정기적인 훈련과 교육 프로그램 을 운영한다.

- ② 산불고위험지역 및 피해지역에는 의무 훈련 프로그램을 도입하여야 하며, 연 2회 이상 주민 참여형 모의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불대응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④ 국가는 산불대응교육 및 훈련에 참여하는 주민, 단체, 기업 등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그 기준과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불대응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매년 평가하고 개선하여야 한다.
- 제54조(마을순찰대 설치 및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산불·산사태 등 재난 발생 시 주민 대피 지원 및 초기 대응을 위한 "마을순찰대"를 운영할 수 있다. 이 조에서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을 포함한다.
 - ② 마을순찰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재난발생 시 마을 주민 대피 지원
 - 2. 산불 발생 초기 상황 보고 및 고립 주민 확인
 - 3. 재난취약계층(노인, 장애인 등) 특별 관리 및 지원
 - 4. 마을 단위 재난 예방 활동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대응 활동
 - ③ 마을순찰대는 이장, 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등 지역 주민이 자율적으로 구성하여 운영하며 세부사항은 관할 지방자치단

- 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마을순찰대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 도록 다음 각 호의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 1. 교육훈련 및 장비 지원
- 2. 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 3. 보험 가입 지원
- 4. 그 밖에 마을순찰대 운영에 필요한 사항
- ⑤ 마을순찰대 활동 중 재난대응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포상 또는 보상을 실시할 수 있다.
- ⑥ 마을순찰대의 구성·운영 및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5조(산불대응기술 연구개발 지원) ① 국가는 산불 예방, 조기 발견, 효과적 진화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기술 연구개발을 지원하여야 한다.
 -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 1. 산불예측 및 확산 시뮬레이션 기술 개발
 - 2. 산불 조기 감지 및 모니터링 기술 개발
 - 3. 산불 진화 장비 및 기술 개발
 - 4. 산불 피해 최소화 및 복구 기술 개발
 - 5. 그 밖에 산불대응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 개발

- ③ 국가는 제2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원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연구개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재정 지원 및 규제 특례

- 제56조(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① 국가는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 및 재건을 위하여 대형산불 피해복구 및 지역재건 특별회계(이하 "특별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 ②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 2. 「국가재정법」 제22조에 따른 예비비
 -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전입 금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
 - ③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 1. 피해주민에 대한 생계ㆍ의료ㆍ주거 등 지원
 - 2. 주택・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복구
 - 3. 산림 복구, 복원 및 관리
 - 4. 지역경제 및 산업 활성화 지원

- 5. 관광·문화·스포츠 시설 복구 및 확충
- 6. 산불대응장비 및 인프라 확충
- 7. 그 밖에 피해복구 및 지역재건에 필요한 사업
- ④ 특별회계는 대형산불 발생일로부터 10년간 운용하며,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⑤ 특별회계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7조(국고보조율 상향 및 지방교부세 특례) ① 국가는 피해지역에 시행되는 다음 각 호의 복구 및 재건 사업에 대하여 국고보조율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에 따른 자연재난 수준 또는 그 이상을 지원한다. 구체적인 복구 및 재건 사업 범위 및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주택 복구 및 재건 지원 비율을 100퍼센트 까지 상향할 수 있다.
 - ③ 피해지역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지방교부세 산정 시 다음 각호의 특례를 적용한다.
 -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사목에 따른 재해복구 대응 수요산정액 시 가중치 부여
 - 2.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별표 6 제1호사목에 따른 현금성 복 지 경비 지출 운영 산정 시 현금성 복지 지출 결산액 제외

- 3. 특별교부세 우선 배정(연간 기준액의 20퍼센트 이상)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례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국고보조율 상향 및 지방교부세 특례는 대형산불 발생일로부터 5년간 적용한다. 다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⑤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8조(증액교부금 지원) ① 「지방교부세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피해지역의 재정상 부득이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방교부세와 는 별도로 증액교부금을 교부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증액교부금은 피해규모, 복구비용,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며, 그 규모와 산정 기준, 교부 시기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증액교부금을 피해지역 지방자치단체에 최대한 신속하게 교부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증액교부금을 지역실정에 맞게 우선 배분하여 집행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증액교부금은 대형산불 발생일로부터 5년간 교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3년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제59조(피해지역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25조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계정 구분과 재원에

- 있어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배분 기준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우선 배분한다.
- ② 피해지역에 배분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재건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우선 활용하여야 한다.
- ③ 피해지역에 대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우선 배분 특례는 대형산불 발생일로부터 10년간 적용하며,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적용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금 배분 가중치, 배분 비율, 사용 범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0조(인허가 절차 간소화 및 규제 유예) ① 피해지역 내 도시계획, 산림개발, 건축, 하천정비, 신재생에너지, 관광단지 조성 등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 리계획 변경 절차 간소화
 - 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절차 간소화
 - 3.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절차 간소화
 - 4.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절차 간소화
 - 5.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절차 간소화
 - 6.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문화유 산 보호구역 내 행위 허가 절차 간소화
 -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허가 절차

- ② 생태보전지역, 문화유산 보호구역 등 중첩 규제지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
-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행위 제한 완화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및 제77조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내 행위 제한 완화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제 완화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간소화 및 규제 유예는 대형산불 발생일로부터 5년간 적용하되,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④ 간소화 및 유예 적용의 구체적인 범위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보칙

- 제61조(금융지원 및 협조 요청) ① 국가는 피해주민 지원을 위하여 금융기관, 공공기관 등에 채무조정, 상환유예, 금리우대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피해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금융지원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조치의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2조(권리의 보호) ① 이 법에 따라 지급된 지원금 등은 「국민기초 생활 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 산정 시 포함하지 아니한다.
 - ② 이 법에 따라 지급된 지원금 등은 압류, 양도 또는 담보 제공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제63조(벌칙)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원금 등을 지급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64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련 기관·단체에 위임하거나 위탁할수 있다.
- 제65조(시행령 위임)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즉시 시행한다.
- 제2조(시행 준비)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위원회와 지원조직의 설치, 대통령령의 제정, 관련 행정조직의 구성, 예산 편성 등의 준비행위 는 이 법 시행일 이전에도 할 수 있다.
- 제3조(적용례) 이 법은 시행 이후 발생한 대형산불 피해복구 및 지원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2025년 3월 22일부터 3월 28일까지 경상북

도 북부지역에서 발생한 대형산불 피해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적용한다.